

『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4일

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접근성,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법적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적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법률상담의 범위(안 제4조)
- 상담실 운영(안 제5조)
- 법률상담관 등(안 제6조)
- 상담방법 등(안 제8조)
- 상담처리 등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조례안은

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6조에서 변호사, 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,
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상담방법을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상담 시 관계공무원의 배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였고,
- 안 제12조에서 법률상담관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해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시민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, 법무사 등 일정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적 서비스를 제공, 시민의 법률문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

하는 것으로, 법률상담 후 향후 소송 및 법적 대응 등과 관련하여
수임유도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법률상담관에 대한 사전
및 상시 교육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